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302383 대여금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륜 담당변호사 이미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민(소송구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경로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4. 7. 선고 2024가소6283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28.
판 결 선 고 2026. 2.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10. 7.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6
만 원씩을 40일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0. 19.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를 2023. 12. 20.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0.부터 2023. 11. 19.까지 합계 290만 원을 송금하
였고, 피고가 근무하는 성매매업소의 사업주인 C은 원고에게 피고의 차용금에 대한 변
제금으로 2024. 5. 2.부터 2024. 5. 6.까지 합계 71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에게 2023. 10. 19. 500만 원을, 2024. 5. 1. 200만 원
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24. 5. 2.부터 2024. 5. 6.까지 합계 71만 원을 변제받



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700만 원 중 미변제금 62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만 사채로 인하여 고통 받는 피고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호의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것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피고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한 선불금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민법 제746조에 정해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



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성매매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금전 대여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피고는 2023. 10. 5.부터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C은 피고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2023. 10. 7. 피고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의 성매매대금 중 일부로 매일 6만 원씩을 4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C은 피고에게 선불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② 원고가 2023. 10. 19.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기 직전인 2023. 10. 17. 피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그 대화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C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성매매대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을 제1호증의 C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중 2023. 10. 17.자 대화내역]

C: 우리가 지금 여유가 안 되니 A사장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도움 준다고 걱정이 돼서 뭐든



얘기 들어보고 하시려고 어쨌든 오신 건데 (중략) 이건 내가 상황이 이러니 도와 달라 빌려 달라 하는 부분이라 금액이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희(피고와 다른 종업원을 지칭)한테는 내가 선불로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에서 다 차감할 생각이야 (중략) 돈을 일단 해주실 수 있다고 하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지 일처리를 해나가는지 그걸 보시는 거 같아 (중략) 돈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어찌됐든 가게를 돌려라 그래야 돈 해줄 수 있고 차감 하겠다 이 뜻인 거 같아

피고: 가게 들어와서 사장님이 담배 하나 같이 피면서 얘기했는데 버는 거 전액을 가져가 시켰다고 하시는 거 같아던데 저는 버는 것에 반을 갈라 했고 D는 10만 원 제외하고 다 상환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C: 그러면 내가 전달 잘못 한 거니 다시 얘기 할게 A사장님한테 (중략) 얘기하니 차용증 받으라고 톡 오시네 (중략) A사장님한테 내가 차용을 하고 너희가 내한테 차용하고

피고: 내가 볼모지...(중략) 왜 돈을 벌어도 버는 거 같지 않죠 (중략) 근데 진짜 우리도 벌어야 빚 정리하는 거고 가게도 같이 돈 버는 거라 우리가 지금 사실 일이 없어서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픈 가게라 콜이 자리를 안잡아서 저희가 벌던 것만큼 못벌어서 모자란 것 뿐 그런 걸 A사장님께 설명을 해서 이해를 좀 시킬 필요가 있을 듯 (중략) 저번에 받은 것 200만 원 포함해서 그냥 앞으로 버는 거에 반씩 까도 되려나요. 매일 '6만 원 + 반씩' 까기가 애매하긴 한데 (중략) 열심히 버는 수밖에 (중략)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대여금을 변제받은 과정에서도 피고로 하여금 성매매업무의 휴무 여부를 보고하게 하였고, 피고가 2023년 10월말경부터 C의 성매매업소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게 되자 C을 통하여 피고에게 복귀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을 제1호증의 C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중 2023. 10. 18.자 대화내역]

피고: 그런데 쉬는 날은 상환 못하는데 그거 봐주시려나. 10월 25일~27일 쉬고 11월 첫주



랑 둘째주에 이틀씩 올라갔다 와야 하는데

C: 일단 서울 다녀오시면 얘기해볼게

[을 제1호증의 C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중 2023. 10. 21. ~2023. 10. 22. 자 대화내역]

C: A사장님이 얘기하는 건 6만 원 하루 빠진 거 얘기하시는 거라네.

피고: 그날 월요일 하루 쉬어가지고 하루 입금을 안했거든요. 나중에 채우려고 (중략) 일단 A사장님 것을 처리하는데 언니한테 피해갈까봐 문제없게 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라 서운하겠지만 이해해주실거라 믿어요. A사장님한테는 얘기 따로 안할 것이고 매일 금액 찍을 것 같기는 한데 원래 25~27일 휴무라고 말했었고 쉬러 가는 날은 입금 못한다고 얘기 해놓았어서 미리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C: 다 이해하고 믿는데 A사장님한테 거짓말은 못한다 내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시달리겠지. 백퍼센트 나보고 책임지라고 애들 갔으니 나보고 한 번에 상환하라고 할 것 뻔한데 미리 A사장님하고 나랑 앉아서 얘기를 하고 갔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대처가 아쉽네. 내가 중간에 끼여 있는 이유도 너희들 입장 조율 해주려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네 (중략) A사장님 입장에서 돈만 문제없이 받으면 되지 근데 내가 돈해줄 여유가 안돼서 애들 보내야 된다고 하니 A사장님은 둘 다 생각해서 나는 어찌됐든 가게 돌리고 애들은 돈해주고 한다고 하신 부분이고 애들이 가버렸다 하면 돈해준 의미가 사라지겠지

[을 제1호증의 C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중 2023. 10. 30.자 대화내역]

C: A사장님한테 다른 데 갔다고 얘기 안했는데 내일 A사장님 가게 와보신다는데 내일 어



떨게 하면 좋을지 D랑 얘기해서 얘기 좀 해줘요. (중략) 내일 오셔서 없는 거 알게 되면 곤란해질 것 같은데

[을 제1호증의 C과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중 2023. 12. 7.자 대화내역]

C: E씨(C이 피고를 부르는 가명) 아예 입금 안하지 말고 하루하루 입금해요. 금액이 커서 저까지 불안해서 안되겠어요. 아니면 포항에 일을 하러 내려오시든지

피고: A사장님이랑 이 부분 이야기 했었는데, 매일 입금해라, 내려 와서 일해라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④ 피고가 2023년 10월경 C의 성매매업소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 버리자 원고는 2023. 12. 28. C에게 성매매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였고 피고에게 C을 통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가 2024. 4. 25. C의 성매매업소에 다시 복귀하자 2024. 4. 30. 피고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2024. 5. 1. 피고로부터 차용금이 7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 10. 10.부터 2023. 11. 19.까지 합계 29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변제금과 대여원리금에 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용금이 7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차용증을 교부받고 피고의 성매매대금의 50%를 변제받기로 하되 C과 F(C의 배우자)이 정산 후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원고의 계좌로 2024. 5. 2.부터 2024. 5. 6.까지 "C(B)"을 송금명의인으로 기재하여 합계 71만 원을 송금하였다.

⑤ 피고가 2024. 5. 6.경 이후부터 다시 C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24. 6. 9.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사진과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빌리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내용이 표



시된 현수막 시안(試案)을 보내면서 미변제금 629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이재덕

판사 박만호